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356
----------	------

제출년월일 : 2013. 1. 18.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2013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시의 장기 비전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기능 재배분을 통하여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청 5국 31과에서 5국 33과로 2개과 신설

- 민원처리기간단축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여권과 신설(안 제7조)
- 정책 개발 및 예산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와 예산과로 재편(안 제8조)

나.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의 명칭을 주요 사무와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변경(안 제9조)

다. 환경교통국 녹색교통과의 명칭을 대중교통과로 변경(안 제11조)

라. 2구청 14과를 2구청 16과로 2개과 신설

- 건설교통과를 건설행정과와 경제교통과로 분리 신설(안 제23조)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조직개편(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2. 12. 31. ~ 2013. 1. 10.(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2013년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개정 계획(총무과-93904, 2012.12.28)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의”를 “안산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국제협력,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및 학교 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업무,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원, 여권,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정보보호, 통신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및 녹색에너지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법무 및 시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예산, 건전재정, 경영평가, 통계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녹색교통과”를 “대중교통과”로 하고,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통, 자전거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화물 및 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3조 중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 를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및 경제교통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별표2중 “사회복지과” 를 “노인장애인복지과” 로 하고, “녹색교통과” 를 “대중교통과” 로 한다.

②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을 “행정국장” 으로 한다.

③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 ” 을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④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 을 “예산담당과장” 으로 한다.

⑤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산시여성비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를 “안산시여성비전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및 제7호 중 “센터장” 을 “소장” 으로 한다.

⑥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본문 및 제7호, 제8조, 제12조 중 “센터장” 을 “소장” 으로 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이 규 환
	계장·팀장 직위·성명	조직교육계장 정 명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한 복 수 (행정 310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u>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3. (생략)</p>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u>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평생교육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u></p> <p>② <u>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u></p> <p>2. <u>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민간협력, 민원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u></p> <p>3. <u>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평생학습 및 학교 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업무,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u></p> <p>5. <u>정보화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제7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u>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u></p> <p>② <u>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총무, 공무원 인사 및 조직·교육,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u></p> <p>2. <u>자치행정, 선거 및 투표, 국제협력,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u></p> <p>3. <u>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평생학습 및 학교 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업무,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u></p> <p>5. <u>민원, 여권,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p> <p>6. <u>정보화, 정보보호, 통신 등에 관한 사항</u></p>
<p>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u>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세정과·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생명산업과 및 녹색에너지과를 둔다.</u></p> <p>② <u>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예산, 심사분석, 법무 및 시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p> <p>2. <u>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u></p> <p>3. <u>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u></p> <p>4. <u>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u></p> <p>5. <u>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u></p> <p>6. <u>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u>기획경제국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및 녹색에너지과를 둔다.</u></p> <p>② <u>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u>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법무 및 시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p> <p>2. <u>예산, 건전재정, 경영평가, 통계에 관한 사항</u></p> <p>3. <u>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u></p> <p>4. <u>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u></p> <p>5. <u>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u></p> <p>6. <u>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u></p> <p>7. <u>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u>사회복지과</u>·여성가족과·일자리정책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p> <p>② (생략)</p>	<p>제9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 ----- <u>노인장애인복지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교통국에는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녹지과·시민공원과·교통정책과 및 <u>녹색교통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1. ~ 4. (생략)</p> <p>5. <u>교통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6. <u>녹색교통 시책 및 대중교통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u></p>	<p>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 ①----- ----- ----- <u>대중교통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교통, 자전거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6. <u>대중교통, 화물 및 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u></p>
<p>제23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u>도시주택과</u> 및 <u>건설교통과</u>를 둔다.</p>	<p>제23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 ----- ----- <u>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u> <u>및 경제교통과</u>-----.</p>

조직개편(안)

본청



사업소

구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56
----------	------

제안년월일 : 2013. 1. 31.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수정이유

- 복지수혜대상자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명칭 변경을 추진

주요골자

- 제9조제1항중 노인장애인복지과를 기존의 명칭인 사회복지과로 재변경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13년 3월 11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고”를 삭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9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일자리정책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2항 별표2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고 “녹색교통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p>	<p>제9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u>사회복지과</u>-----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부 칙</p> <p>제1조(시행일) ----- 2013년 3월 11일-----.</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 “녹색교통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p>